

[붙임] 원광보건대학교 규정 개정 승인문

1. 원광보건대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모집단위의 유아교육과 주간 “94명”을 “80명”으로, 합계 “94명”을 “80명”으로 하고, 사회복지과 주간 “124명”을 “114명”으로 하며, 합계 “151명”을 “141명”으로 하고, 글로벌호텔관광과 주간 “60명”을 “45명”으로 하며, 합계 “60명”을 “45명”으로 하고, 간호학과 주간 “168명”을 “178명”으로 하며, 합계 “168명”을 “178명”으로 하고, 방사선과 주간 “86명”을 “114명”으로 하며, 합계 “86명”을 “114명”으로 하고, 식품영양과 주간 “57명”을 “50명”으로 하며, 합계 “57명”을 “50명”으로 하고, 외식조리과 주간 “90명”을 “85명”으로 하며, 합계 “90명”을 “85명”으로 하고, 미용피부화장품과 주간 “82명”을 “78명”으로 하며, 합계 “82명”을 “78명”으로 하고, 총계 주간 “1,451명”을 “1,434명”으로 하며, 합계 “1,478명”을 “1,461명”으로 한다.
- 제6조(교직원) 제3항의 “강의교수”를 “강의교수, 연구교수”로 한다.
- 제7조(조직) 제13호의 “K-MOVE사업단”을 “K-MOVE 사업단, 원광보건대학교 BH공유대학사업단”으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구 분	내 용					
현행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우리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대계열분류	학부	모집단위(학과명)	입 학 정 원		
				주	야	수업연한
	인문사회	복지교육학부	유아교육과	94		3
	인문사회	복지교육학부	사회복지과	124	27	2
	인문사회	글로벌호텔관광학부	글로벌호텔관광과	60		2
	인문사회	글로벌호텔관광학부	글로벌항공서비스과	30		2
	자연과학	간호학부	간호학과	168		4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임상병리과	120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물리치료과	80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방사선과	86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치기공과	80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치위생과	120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의무행정과	80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안경광학과	70		3
	자연과학	식품클러스터학부	식품영양과	57		2
	자연과학	식품클러스터학부	외식조리과	90		2
	자연과학	뷰티디자인학부	미용피부화장품과	82		2
	자연과학	군사학부	의무부사관과	40		2
	공 학	군사학부	전투부사관과	40		2
	예·체능	뷰티디자인학부	3D제품디자인과	30		2
	총계			1,451	27	1,478

구 분	내 용						
개정(안)	제5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우리대학에 두는 학과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대계열분류	학부	모집단위(학과명)	입 학 정 원			수업연한
				주	야	계	
	인문사회	복지교육학부	유아교육과	80		80	3
	인문사회	복지교육학부	사회복지과	114	27	141	2
	인문사회	글로벌호텔관광학부	글로벌호텔관광과	45		45	2
	인문사회	글로벌호텔관광학부	글로벌항공서비스과	30		30	2
	자연과학	간호학부	간호학과	178		178	4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임상병리과	120		120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물리치료과	80		80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방사선과	114		114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치기공과	80		80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치위생과	120		120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의무행정과	80		80	3
	자연과학	보건의료학부	안경광학과	70		70	3
	자연과학	식품클러스터학부	식품영양과	50		50	2
	자연과학	식품클러스터학부	외식조리과	85		85	2
	자연과학	뷰티디자인학부	미용피부화장품과	78		78	2
	자연과학	군사학부	의무부사관과	40		40	2
	공 학	군사학부	전투부사관과	40		40	2
	예·체능	뷰티디자인학부	3D제품디자인과	30		30	2
	총계			1,434	27	1,461	

현 행	개 정
제6조(교직원)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강의 교수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6조(교직원)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강의 교수, 연구교수 -----.
제7조(조직) ① (생략) 1. ~ 12. (생략) 13. 특별사업기구에는 LINC+사업단, 혁신지원사업단, K-MOVE 사업단 등을 둘 수 있다.	제7조(조직) ① (현행과 같음) 1. ~ 12. (현행과 같음) 13. -----, K-MOVE 사업단, 원광보건대학교 BH공유대학사업단 -----.
	부 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직제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3조(기구) “혁신지원사업단 등을 둘 수 있다.”를 “혁신지원사업단, 원광보건대학교 BH 공유대학사업단 등을 둘 수 있다.”로 한다.
- 제20조(원광보건대학교 BH공유대학사업단) “① 원광보건대학교 BH 공유대학사업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원광보건대학교 BH 공유대학사업단은 총장 직속의 특별사업기구로 두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광보건대학교 BH 공유대학

사업단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를 신설한다.

~ 제26조(교원) 제4항의 “강의교수”를 “강의교수, 연구교수”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3조(기구) 우리대학에는 대학교당, 대학본부, 학부 및 학과, 산학협력단, 부속기관, 부설기관 및 부설연구소, 학교기업으로 구성하며 총장직속기구로 비서실, 대외협력실, 특별사업기구를 두며, 특별사업기구에는 INC+사업단, K-MOVE 사업단, <u>혁신지원사업단</u> 등을 둘 수 있다.	제3조(기구) ----- ----- ----- ----- ---- <u>혁신지원사업단, 원광보건대학교 BH 공유대학사업단</u> <u>등을 둘 수 있다.</u>
<조신설>	<u>제20조(원광보건대학교 BH공유대학사업단)</u> <u>① 원광보건대학교 BH 공유대학사업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한다.</u> <u>② 원광보건대학교 BH 공유대학사업단은 총장 직속의 특별사업기구로 두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원광보건대학교 BH 공유대학사업단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u>
제26조(교원)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교원 외에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기 위하여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u>강의교수</u> 등 특수신분교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교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강의교수, 연구교수</u> ----- -----,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대학평의원회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11조(회의록) 제2항의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6인 이상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를 “회의록 서명은 회의 당일 참석자 확인 서명으로 같음한다.”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11조(회의록) ① (생략) ② <u>회의록에는 출석위원 6인 이상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u>	제11조(회의록) ① (현행과 같음) ② <u>회의록 서명은 회의 당일 참석자 확인 서명으로 같음한다.</u>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등록금심의위원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7조(회의록)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를 “회의록 서명은 회의 당일 참석자 확인 서명으로 같음한다.”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7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u>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u>	제7조(회의록) ① ----- <u>회의록 서명은 회의 당일 참석자 확인 서명으로 같음한다.</u>
	부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 학사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20조(성적) 제2항의 “군 입영 휴학자로”를 “군 입영 휴학자, 질병 휴학자로”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0조(성적) ① 성적은 교과 성적(정기 및 임시시험, 평소성적포함) 80%와 출석성적 20%(별표1)의 비율로 산출한다. ② 당해학기 <u>군 입영 휴학자로</u> 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재학한 자의 성적은 휴학일자까지의 중간고사 및 수시 평가한 성적으로 평가한다. ③ ~ ⑬ (생략)	제20조(성적)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군 입영 휴학자, 질병 휴학자로</u> ----- ----- <u>평가할 수 있다.</u> ----- ③ ~ ⑬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교직과정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7조(교원자격증발급기준) 제7호에 “성인지 교육 이수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충족한 자”와 같은조 제8호에 “결격사유 확인 : 2021.0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성범죄 이력 관련 서류)를 확인한 자”를 신설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교원자격증발급 기준) 소정의 교직과정을 이수한 자이며 해당학과의 학위를 수여 받은 자라도 다음사항에 해당하여야 교원자격증을 발급 할 수 있다. 1. ~ 6. (생략) <호신설> <호신설>	제7조(교원자격증발급 기준)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7. <u>성인지 교육 이수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 교육을 2회 이상 충족한 자</u> 8. <u>결격사유 확인 : 2021.0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성범죄 이력 관련 서류)를 확인한 자</u>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7. 조교임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5조(정원) “편제정원 16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인을 추가할 수 있다.”를 “재학생 수(연도별 4월 1일 기준) 160명 단위로 1명씩을 추가할 수 있다.”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정원) 조교는 각 학과별 1인의 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편제정원 160명을 초과 할 경우에는 1인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정원) ----- 재학생 수(연도별 4월 1일 기준) 160명 단위로 1명씩을 추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8. 교원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2조(교원의 정의 및 직위) 제2호의 “강의교수 등의 특수신분교원을 말한다.”를 “강의교수, 연구교수 등의 특수신분교원을 말한다.”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2조(교원의 정의 및 직위) ① 우리대학의 교원은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강사로 구분한다. 1. 전임교원이라 함은 정년과정 전임교원과 비정년과정 전임교원으로 구분하며, 정년과정 전임교원은 일반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을 말하며, 비정년과정 전임교원은 강의전담교원과 외국인교원, 특임교원을 말한다. 다만, 비정년과정 전임교원은 대외적으로 비정년과정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비전임교원이라 함은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강의교수 등의 특수신분교원을 말한다.	제2조(교원의 정의 및 직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강의교수, 연구교수 등의 특수신분교원을 말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원광보건대학교 BH(Bio Health) 공유대학사업단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가. 제정문

원광보건대학교 BH(Bio Health) 공유대학사업단 운영 규정

제정 2021. 06. 0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주관하에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바이오헬스 분야)」(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원광보건대학교 BH 공유대학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단의 조직) 사업단은 총장 직속기구로 운영하며 원광보건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다만, 한국연구재단 또는 사업 컨소시엄(주관대학, 참여대학)의 사업 규정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사업 및 역할)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업 컨소시엄과 연계 및 협력
2.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구성 및 관리
3. 교육컨텐츠 및 교육인프라의 구축 및 관리
4. 학사제도 개선 제안
5. 교원 및 학생의 참여 지원 및 홍보
6.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단장과 부단장)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을 임명하고, 사업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사업단장은 대학의 교무위원급으로 하고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사업단에는 부단장을 둘 수 있으며 총장이 임명한다.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 유고시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감사) ① 사업단에 감사 1인을 두며, 감사는 사업단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며, 위법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지체없이 총장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7조(전담인력) ① 사업단에 사업기간 동안 사업전담 연구교수, 연구원, 직원 등의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담인력에 대한 자격 및 처우는 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8조(기타) ① 첨단 교육실 구축, 혁신 교육방법 연구, 유연학사제도 등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단 내에 별도의 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제3장 위원회

제9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처장, 교무처장, 학생성공지원처장, 산학협력단장의 당연직 위원과 교내 전문가 및 외부 인사 5인 이내로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며,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직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사업 계획 심의 및 조정
2. 컨소시엄 사업계획과 본 사업간 정합성 심의
3.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및 예산변경
4.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성과 관리
6. 자체평가 결과와 환류 계획에 대한 심의
7.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 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의 교내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교원 및 직원 중에서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2. 사업목표 및 지표(핵심 및 자율)관리
3. 사업추진 및 관리
4. 사업비 상시 관리 및 보고 (부적정 집행사례 발견시 즉시 운영위원회에 보고)
5. 사업에 대한 구성원 의견 수렴 및 교내·외 홍보
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장 사업 운영

제11조(사업비) 사업단의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정부지원금
2. 원광보건대학교 대응투자금
3. 기타의 자원

제12조(회계연도) 사업단의 회계연도는 주관기관과 관리기관의 사업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사업비의 집행) 사업비는 한국연구재단의 사업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제14조(보칙)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학사에 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절차에 대한 운영지침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원광보건대학교 BH 공유대학사업 연구교수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가. 제정문

“

원광보건대학교 BH 공유대학사업 연구교수 인사규정

제정 2021. 05. 0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에 따른 바이오헬스(이하 'BH'라 한다) 분야 운영 및 원광보건대학교(이하 '우리대학'이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의한 BH연구교수 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BH연구교수라 함은 디지털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사업비 지원을 받는 우리대학 BH공유대학사업단(이하 'BH사업단'이라 한다.)에 소속된 연구자로서 해당 사업비에서 전임 연구인력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임용 및 자격) ① BH연구교수의 임용은 BH공유대학사업단장(이하 'BH사업단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교무처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BH연구교수는 국내·외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BH연구교수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우리대학 비전임교원 임용 절차를 준용하여 임명한다.

③ BH사업단장의 요청에 의해 BH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만료일 1개월 이전에 재임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 평가 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4조(재원) BH연구교수 급여, 퇴직금, 부담금 등 임용 일체의 비용은 BH사업단의 사업비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교비로 추가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임용기간) ① BH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최초 임용시 1년으로 하되, 이후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② 해당 사업 종료시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BH연구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BH연구교수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본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3. 병약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계약의 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본 조항은 사업 종료 시점 이전까지 유효하며 종료 시점 이후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제출서류) BH연구교수 신규 및 재임용 지원자는 총장이 정한 구비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복무) ① BH연구교수의 복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BH사업단장의 지시를 받는다.

② BH연구교수가 임용기간 중 연구결과로 발표한 출판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대학에 귀속시킨다.

제9조(강의) BH연구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BH사업단장의 허가를 받아 주당 6시간 이내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처우) ① BH연구교수의 보수는 한국연구재단이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업비에서 지급받는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연금, 교직원 보수규정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대학은 BH연구교수에게 연구공간을 제공하여야 하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BH연구교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우리대학 제반 관련 규정을 준용하거나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사업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11. 장학금지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개정내용

- 제20조(이중수혜금지) 제1항의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을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119장학금”을 “119장학금, 농촌사랑장학금”으로 한다.
 -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제20조(이중수혜금지) ① 각종 장학금은 STAR장학금, 학업장려장학금, 특별장학금, Happy With Us포인트 장학금, 원광보건사랑장학금, <u>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u> , 외국인장학금, <u>119장학금</u> 을 제외하고 이중수혜를 받을 수 없다.	제20조(이중수혜금지) ① ----- -----, 글로벌인재육성장학금, -----, <u>119장학금</u> , <u>농촌사랑장학금</u> -----.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